

로부터 15cm 이상 멀리하여야 한다.

○ 대상이 변조파인 경우가 많으므로 제곱평균치(root mean square)를 얻을 수 있는 측정치를 사용한다.

○ 간헐파인 경우는 duty ratio에 의한 보정이 필요하다. duty ratio는 on/off의 일주기에 대한 on time의 비이다. 즉 측정치에(duty ratio)<sup>1/2</sup>를

곱한다.

○ 기타 대상파가 probe의 측정주파수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이상치가 얻어지거나 또는 너무 가까이 즉, 대상 30cm이내에 접근하면 측정계와의 정전결합이 생겨 오히려 이상한 값을 얻게되는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사례

## 관계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참고서

#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산업(주)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갑자기 중얼거리고 책상을 두들기는 등 정신질환증세를 나타낸 경우

(88-85호 88. 4. 18. 기각)

### 이 유

재심사 청구인 금○○(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7. 12. 17.자 금○○(이하 “피재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피재자는 ○○산업(주) 소속 프레스공으로 근무중인 1987. 10. 29. 00 : 40경 프레스공장 4라인에서 갑자기 중얼거리고 책상을 두들기며 기어다니기도 하고 토끼뜀, 엎드려 팔굽히기 등 정신질환증세를 보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 진단한 결과 “정신증”으로 원처분청에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자문의 소견상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됨”임으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 재 결 서

#### 재 심 청 구 인

주소 : 경남 거창군 용양면 한가리

성명 : 금 ○ ○

####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금 ○ ○

소속 : ○○산업(주)

#### 원 처 분 청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던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평소 건강한 자로서 정신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병력이 전혀 없었고 다만 1987. 2. 28과 1987. 7. 28 두 차례에 걸친 작업중 프레스 사고 이후 동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노이로제 증세와 우울증 피해망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정신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전의 쟁점은 피재자의 “정신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전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8. 3. 17. 금○○)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3. 20. 서울관악지방 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8. 1. 18. 심사관 박○○)
4. 요양결정 결의서 사본(1987. 12. 14.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5. 재해사고 보고서 사본(1987. 10. 23. 안전유지자 정○○)
6. 소견서(1987. 11. 21. 한강성심병원장)
7. 목격자 진술서(1987. 10. 22. 문○○, 김○○)
8. 소견서(1988. 4. 1. 백○○ 신경정신과 의원)

## 9.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산업(주) 소속 프레스공으로서 근무 중인 1987. 10. 29. 00:40경 갑자기 중얼거리며 책상을 두들기며 기어다니기도 하고, 토키뜀, 엎드려 팔굽히기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 진단한 결과 “정신증”으로 원처분청에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자문의 소견상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됨”이므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재자가 평소 건강한 자로서 정신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병력이 전혀 없었고, 1987. 2. 28과 1987. 7. 28. 두 차례에 작업 중 프레스사고 이후 동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노이로제증세와 우울증, 피해망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백○○ 신경정신과 의원의 소견서상 “피재자는 1) 과대망상, 2) 피해망상, 3) 비적절 감정 등이 있고 당원에 입원중임. 상기 금○○는 급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며 따라서 금○○의 정신분열증의 발병은 작업장의 환경, 상황, 스트레스 등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상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됨” 등으로 미루어볼 때 피재자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렵고 또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에 대하여 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다.

○○건설(주) 장비사업소 근로자가 점심식사후 휴식시간에 쓰러져 상병명 “1) 뇌전색증, 2) 승모판막증, 3) 심부전증”이 발생한 경우

(88-95호 88. 6. 20. 기각)

## 재 결 서

재심청구인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성명 : 김 ○ ○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성명 : 방 ○ ○

소속 : ○○건설(주) 장비사업소

## 원처분청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7. 11. 27. 자 방○○에 대하여 행한 산업체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피재근로자 방○○(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건설산업(주) 장비사업소 도장공으로 근무중인 1987. 9. 9. 12:50경 점심식사후 도장반 사무실에서 오후 작업을 위하여 대기중 기침을 두차례 하면서 쓰러지므로 동료들에 의하여 즉시 고려대의대부속 구로병원으로 후송한 바 상병명 “1) 뇌전색증, 2) 승모 판막증, 3) 심부전증”으로 요양증인자로서 청구인은 원처분청에 요양신청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휴식시간에 발병하였고 평소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였으며 또한 상병명을 원처분청 자문의에게 자문한바 “동인의 상병은 업무상과는 연관이 없는 개인지병으로 기존의 심판막증과 뇌전색증이 병합되어 발생된 것”임의 소견이므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체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업무수행중의 발병으로 의당 보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로서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체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8. 3. 30. 김○○)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3. 31.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88. 2. 12. 박○○)
4. 요양결정 결의서 사본(1987. 11. 27.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5. 재해조사 복명서 사본(1987. 11. 17. 행정서기보 김○○)
6. 문답서 사본(1987. 11. 16. 근로자 양○○)
7. 소견서 사본(1987. 11. 4. 고대의대부속 구로병원장)
8. 의학적 감정서(1988. 2. 8. 한강성심병원 의사 길○○)
9.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해보면, 피재자 방○○은 ○○건설산업(주) 장비사업소 도장공으로 근무중인 1987. 9. 9. 12:50경 점심식사후 도장반 사무실에서 대기중 기침을 두차례 하면서 쓰러져 고려대의대부속구로병원에 후송한바 상병명 “1) 뇌전색증, 2) 승모 판막증, 3) 심부전증”으로 요양증인자로서 원처분청에 요양 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는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병명을 자문의에게 자문한바 “동인의 상병은 업무상과는 연관이 없는 개인지병으로서 기존의 심판막증과 뇌전색증이 병합되어 발생한 것”임의 소견으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 요양불승인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병명과 업무기인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 피재자 방○○은 1987. 9. 9. 12:50경 점심식사후 도장반 사무실에서 대기중 쓰러져 고려의대부속 구로병원에 후송 상병명 “1) 뇌전색증, 2) 승모 판막증, 3) 심부전증”으로 요양증인자이다.

둘째 : 피재자의 상병명에 대하여 업무와 상병간에 의학적 기인성을 알기 위하여 원처분청 자문의에게 자문한바 기존의 심판막과 뇌전색증이 일차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임이다.

세째 : 피재자의 업무상 질환 여부에 대한 의학적 감정을 한 간정소견(한강성심병원 길○○)은 “방○○의 질병은 뇌전색증, 승모판막증, 심부전증임, 뇌전색증의 발생원인은 뇌동맥의 경화성 질환, 뇌혈전증, 심장질환, 부정맥, 뇌동맥경련을 동반한 지주막하출혈, 심폐부전증, 동맥염, 매독 등의 질환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질병자는 승모판막증의 심장질환이 심장부전증이 이미 있던자로 본 승모판막증 등의 심부전증으로 뇌전색증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승모판막증은 기존적인 질병으로 승모

판막증, 심부전증, 뇌전색증 등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의학적인 업무 기인성이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피재자의 경우 기존 질병의 업무외적 사유로 발생된 질병일뿐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본 재해에 대하여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

## 자 료

# 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

편집실

ETHYLENE CHLOROHYDRIN( $\text{ClCH}_2\text{CH}_2\text{OH}$ )

2-chloroethanol ; 2-chloroethyl alcohol ; glycol chlorhydrin  
Ceiling limit, 1ppm (약 3 mg/kg)

Ethylene chlorhydrin은 약한 에테르 냄새를 가진 무색의 액체이다. Ethylene chlorhydrin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분자량의 80.52이고, 20°C에서 비중이 1.197이며, 융점 -62.78°C, 비점 128 -130°C이고, 증기압은 20°C에서 4.9mmHg이다. Open flash point는 40°C에서 105°F이고, Close cup flash point가 60°에서 140°F이다. 폭발한계

농도는 공기 중에서 4.9%와 15.9%이며, 취식 한계는 0.4ppm<sup>1)</sup>이다. Ethylene chlorhydrin은 물과 알콜에 잘 섞이며, 대부분의 유기 용제에 잘 녹는다.

Ethylene chlorhydrin은 음식물(곡물, 양념)과 약물을 소독 중에, 그리고 ethylene oxide를 외과용 또는 안과용으로 제조시 생성된다.